

육아정책 Brief

육아정책연구소

2023.9.21

통권 제97호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 : 출생코호트별 보편 지원 정책의 수급액을 중심으로

I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의 변화와 효과성에 대한 논쟁

초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가장 주된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을 들 수 있음.

정부는 장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영유아 부모들은 여전히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¹⁾, 2021년 육아지원정책 사업 예산 14조 9,672억원 중 10조 3,138억원(68.9%)이 양육비용 지원 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²⁾.
- ▶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현금성 보편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³⁾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합계출산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⁴⁾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도입 이후 양육비용 지원은 보편 지원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함.

2013년 이후 시행 중인 영유아기 비용 지원 제도 중 모든 영유아에 대한 지원, 즉 보편 지원의 형태를 가진 제도는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영아수당 포함)가 있음.

- ▶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은 제도 신설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이 상향조정되며, 제도 간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 왔음.

본고는 최근 1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 제도 중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는 정책을 중심으로 영유아기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 제도적 변화가 정책 수혜자의 수급 총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액을 추계해 보았으며, 출생코호트별 수급액의 변동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숙고해 보고자 함.

- ▶ 그 간의 양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산 투입의 규모에 집중하거나 특정 제도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임.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p.15
 2) 김동훈·최효미·홍근석·김태우(2021). 양육지원정책 중장기 재정 추계 및 부담구조 개선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47-48.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2.12.28.).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p.15
 4) 이철희·이소영(2022). 현금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사례로부터의 증거. 경제학연구, 70(2). pp.61-93.
 최효미·박은정·김태우·우석진(2019). 육아정책분야 재정 투자의 성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9-113.

- ▶ 본고는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을 하나의 지원 체계 안에서 공존하는 다양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정책 수혜자 입장(출생코호트별)에서 영유아기에 지원받는 수급 총액을 집계해 봄으로써, 정책 간의 상호 보완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 변화가 갖는 시사점을 유추해보고자 함.

II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 현황과 경과

지원 근거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은 총 4개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유아학비는 「유아교육법」,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지원됨.

보육료⁵⁾ 및 유아학비 지원은 2013년 전면적인 무상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도입으로, 대표적인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음.

- ▶ 2013년 이전의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은 선별적 차등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2012년 0~2세와 5세⁶⁾에 대해 보편적 무상 지원이 실시된 이후, 2013년부터 영유아기 전 연령에 대한 보편적 무상 지원이 실시되었음.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맥락을 같이 하며 변화해 왔으며, 2013년부터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 지원됨.

- ▶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유아학비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며, 제도 도입 이후 약10년 간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음.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에는 소득인정액 하위 90%인 영유아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 월령 기준 71개월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원되는 보편 지원으로 변경됨.

- ▶ 2019년 이후 지원 금액은 변동하지 않았으나, 지원 대상의 월령이 상향조정되면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2023년 기준 95개월 이하 아동까지 지원됨.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2년 시행된 영아수당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지원 정책임.

- ▶ 영아수당은 2022년 도입되어 1년간 시행되고 폐지되었으며, 2023년에는 부모급여가 새롭게 도입됨.
- ▶ 영아수당과 비교할 때 부모급여는 지원 수준이 크게 상향 조정되었다는 특징을 가지며,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지급액이 보육료 지원액보다 크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는 차이점이 있음.
- ▶ 즉, 2023년 기준 0세 보육료 지원금은 514,000원인데 부모급여는 70만원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원받는 영아에게는 차액에 해당하는 18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0세의 경우 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 수준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음.

5) 본고에서 보육료는 부모보육료를 지칭하며, 기관보육료 및 차액보육료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6) 보육연령 기준. 기준년도 1월1일 기준 만 나이를 의미하며, 해당 연령반을 의미함.

〈표 1〉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의 도입 및 주요 변화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포함)
2012년	0-2세, 5세 보편 지원 시작	-	-	-
2013년	0-5세 전 연령 보편 지원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 수준은 동결	-	-
2016년 7월	0-2세 맞춤형 보육 시행 (종일반/맞춤반)		-	-
2017년			-	-
2018년 9월			선별 지원 (소득인정액 90%이하)	-
2019년 1월			0~71개월 이하 모든 아동 보편 지원	-
2019년 9월			지원 연령 상향 (83개월이하)	-
2020년 3월	기본보육시간 제도 운영 (기본보육/연장보육)		-	-
2021년			-	-
2022년 1월			지원 연령 상향 (95개월이하)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23개월 아동
2022년 4월				
2023년 1월				

주: 1) 기준시점은 제도가 적용되는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표기함.
 2) 2022년은 영아수당 제도가 적용되었으며, 부모급여는 2023년에 도입되었으나, 지원 대상이 동일하므로 지면 관계상 함께 표기.

자료: 1) 최호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pp.39-42.
 2) 보건복지부(2012~2023).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3) 보건복지부(2018b~2023b). 각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4)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p.3~8.
 5)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3~8.

III 출생코호트별 영유아기 양육비용 지원금 수급 총액

0세부터 5세(취학전)까지 보편 지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은 코호트이면서 2023년 현재 기준 영유아기 전체 기간⁷⁾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코호트는 2012~2017년생임.

아동의 연령이 상승하면서 보육료·유아학비 수급액은 줄어들지만, 동일 연령에 대한 지원 단가는 매해 조금씩 상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 〈표 2〉는 출생코호트별로 해당 연령일 때 지원받은 지원금 종류별 지원 단가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연령 중간에 월령 변화 등으로 실제 수급한 지원금 단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더 큰 비용 지원액을 기준으로 1년 동안 해당 지원금이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음.⁸⁾
- ▶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및 가정양육수당 수급이 제한됨. 아동수당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 급여이므로 구분하여 표기함.
- ▶ 한편, 표에서 우상향 대각선에 위치한 금액이 출생코호트가 속한 연도의 지원 단가를 의미함. 예를 들면, 2017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43만원, 1세(2015년생 1세)는 37만8천원, 2세(2014년생 2세)는 31만3천원임.

7) 영유아기는 출생부터 초등 취학 전까지 총 7년의 기간을 의미하며, 월령을 기준으로 최대 83개월 이하인 아동을 의미함.
 8) 예 : 가정양육을 한 2012년 4월생의 경우 2013년 3월까지 20만원, 2013년 5월에는 15만원을 지원받지만, 여기에서는 20만원을 적용함.

〈표 2〉 2012~2017년생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액(월)

(단위 : 천원)

출생년도	지원금 종류	영아				유아		
		0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83개월)
2012년생	보육료,유아학비	394	394	347	295	220	220	220
	가정양육수당		(150)	(100)	(100)	(100)	(100)	(100)
2013년생	보육료,유아학비	394	394	357	313	220	220	22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2014년생	보육료,유아학비	394	406	368	313	220	220	24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2015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06	418	378	321	220	240	26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2016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18	430	388	331	240	26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2017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30	441	400	343	260	28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주: 1) 연령 구분은 보육연령(기준년도 1월1일 기준 만 나이)을 의미하며, 0세반은 실제로는 2개 연령(코호트)을 포괄함.
 2)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 수급이 불가능하며, ()의 수치는 둘 중 수급액이 적은 쪽(최소 수급액)을 의미함.
 3) 2017~2019년에 지원받은 보육료·유아학비는 종일반 지원금 기준 적용, 2021년 이후는 기본보육시간에 대한 부모보육료 기준을 적용함.
 4) 가정양육수당은 월별별로 수급액이 달라지며, 편의상 각 년도 1월생을 기준(수급기간이 가장 김)으로 수급액을 산정함.
 5) 짙은 회색 음영(하얀 글씨)은 아동수당을 수급했던 시기를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2~2023),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만0~5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2) 보건복지부(2018b~2023b), 각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2018~2023년생은 2023년 기준 여전히 영유아로, 2024년 이후 지원금은 2023년 지원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산출함.

부모급여 및 영아수당 제도의 도입으로 2022년 이후 출생아들의 수급 패턴은 2021년 이전 출생아들과 차이를 보임.

- ▶ 2012년생이 영유아기 동안 지원받는 수급 총액은 최대 2,508만원(최소 780만원)으로, 최근에 출생한 코호트일수록 지원금 수급 총액이 높음.
- ▶ 2017년생은 영유아기 동안 최대 3,520만8천원(최소 1,740만원)의 지원금을 수급 받음.
- ▶ 출생당해년도부터 부모급여를 수급받는 2023년생의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 총액은 최대 4,297만2천원, 최소 2,700만원으로, 이전 코호트에 비해 수급액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음.

〈표 3〉 2018~2023년생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액

(단위 : 천원)

출생년도	지원금 종류	영아				유아		
		0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0~11개월)	(12~23개월)	(24~35개월)	(36~47개월)	(48~59개월)	(60~71개월)	(72~83개월)
2018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41	454	414	353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100
2019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54	470	426	364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0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70	484	439	375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1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84	499	452	375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200)	(150)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2년생	보육료,유아학비	499	514	452	375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100)	(100)	(100)	(100)	(100)
	부모급여	(300)*	(350)					
2023년생	보육료,유아학비		514	452	375	280	280	280
	가정양육수당			(100)	(100)	(100)	(100)	(100)
	부모급여	700	(350)					
2023년생	보육료,유아학비			100	100	100	100	100
	아동수당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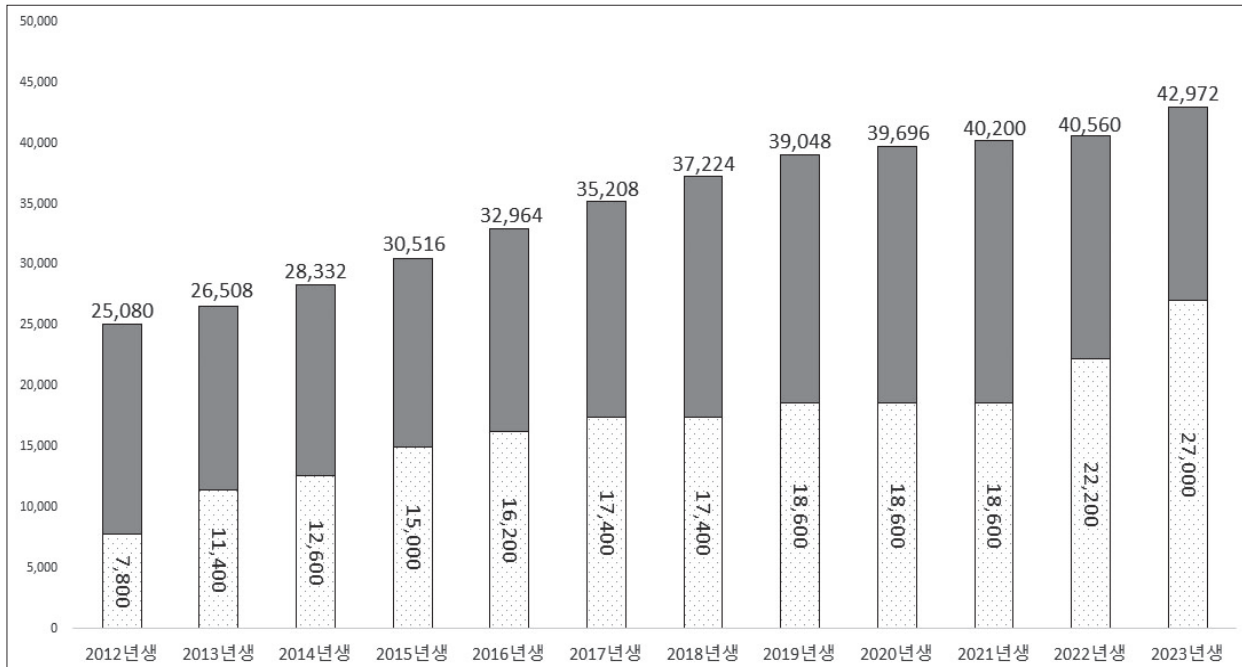
- 주: 1) 연령 구분은 보육연령(기준년도 1월1일 기준 만 나이)을 의미하며, 0세반은 실제로는 2개 연령(코호트)을 포함함.
 2) 백색 면의 수치는 실제 지원금 수준을 의미하며, 회색 음영의 수치는 2024년 이후로도 2023년의 양육비용 지원 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적용한 금액으로, 해당자들이 아직 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3) 보육료·유아학비와 가정양육수당은 동시 수급이 불가능하며, ()의 수치는 둘 중 수급액이 적은 쪽(최소 수급액)을 의미함.
 4)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는 월령별로 수급액이 달라지며, 편의상 각 년도 1월생을 기준(수급기간이 가장 김)으로 수급액을 산정함.
 5) 2022년생의 출생당해(0~11개월) 부모급여 수급액(*표시 부분)은 실제로는 부모급여가 아닌 영아수당 지원금을 뜻함.
 6) 2023년생의 출생당해(0~11개월) 부모급여 수급액은 어린이집을 다녀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아,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무관하게 수급 총액이 동일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입하지 않음.
 7) 짙은 회색 음영(하얀 글씨)은 아동수당을 수급했던 시기를 의미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2~2023).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만0-5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2) 보건복지부(2018b~2023b). 각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3)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p.3~8.
 4)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3~8.

영아수당이 도입된 2022년생 이후 영유아기 수급 총액 최저값이 크게 상승하며, 최대값과 최저값 사이의 격차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됨.

- ▶ 보육료·유아학비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반해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고정되어 있어, 2021년생 이전에는 최대값과 최저값 사이의 격차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음.
- ▶ 그러나, 2022년 영아수당 및 2023년 부모급여 제도의 도입으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현금 지급액이 크게 상승하여, 최대값과 최저값 사이 격차가 축소됨.

[그림 1] 2012~2023년생 영유아기 지원금 수급 총액

(단위 : 천원)



주: 1) 그래프 하단의 금액은 수급 총액이 최저(영유아기 계속 가정양육수당만 수급)일 때 금액을 의미하며, 그래프 상단의 수치는 수급 총액이 최대(영유아기 계속 보육료 혹은 유아학비를 수급)일 때 총액을 의미함.

2) 2024년 이후 지원금은 2023년의 양육비용 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값임.

자료: 1) 보건복지부(2012~2023). 각년도 보육사업안내. '만0-5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분을 참조하여 작성.

2) 보건복지부(2018b~2023b). 각년도 아동수당 사업안내.

3) 보건복지부(2022c). 2022년 영아수당 사업안내. pp.3~8.

4) 보건복지부(2023c).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pp.3~8.

IV 영유아기 보편 비용 지원 정책의 함의

영유아기 비용 지원은 새로운 제도가 신설되거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조정 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지원금 수급 총액이 점점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3년생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수급 총액이 크게 상승함.

- ▶ 지원액의 상승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됨.
- ▶ 한편, 영유아의 생애주기에 따라서는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 1인당 지원금이 적어지는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영아기 집중 투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 통상 양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커지는 특징이 뚜렷하게 발견되는데⁹⁾, 현행 영유아기 보편 지원 정책은 자칫 양육비용의 증가와는 역방향의 설계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는 보육료·유아학비의 경우 학급당 아동 수가 많아져 1인당 서비스 이용비용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으로, 영유아가 어릴수록 보육료 서비스 이용 단가(지원 단가)가 높기 때문임. 또한, 보육료 지원과 대체 관계에 있는 가정양육수당도 월령이 낮을수록 지원 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임.

9)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126.

한편,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 방식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통상 가구당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체감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¹⁰⁾, 보편 지원 정책의 지원금은 영유아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아동 단위 보편적 지원 체계는 가구당 양육비용 대비 지원금 비중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 즉, 좀 더 어린 연령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변화는 영유아 가구로 하여금 보다 장기간에 걸쳐 지원금 수급을 가능하게 만들며, 후속 출산에 따른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모급여 제도 도입 이후,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른 지원금 수급액 격차가 감소되어 형평성 제고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0세(0~11개월)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영아 부모가 어떤 형태의 양육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영아 부모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

- ▶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가정양육 시 월7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전액(51만4천원)을 지원하고도 차액(18만6천원)은 현금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어, 아동수당과 유사하게 모든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 받음.
- ▶ 정부는 2024년에는 부모급여 지원 금액을 확대(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50만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¹¹⁾. 이처럼 부모급여가 더욱 확대되면 영아기 집중 투자에 따른 정책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최효미 연구위원 hmchoi@kicce.re.kr

10) 이정원·이재희·김자연·우석진·김태우(2022), KICCE 소비실태조사 :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p.119.

1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3. 1. 4).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97호